

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제기 공고

상법 제 376 조 제 2 항 및 제 187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사건	서울중앙지법 2017 가합 534738 주주총회결의취소 등
당사자	- 원고: 남태훈 - 피고: 1.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, 2.황동철
청구내용	1. 주위적으로, 피고 주식회사 쌍용양회의 2017.3.24.자 정기주주총회의 현금 및 현물 배당 결의를 취소한다. 2. 예비적으로,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114,451,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3.24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 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구함
소 제기일자	2017.5.19
확인일자 ^{주)}	2017.5.29

주)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아 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.

2017.5.30

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

대표집행임원 사장 황동철